

## 충청북도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이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재해대책본부(이하 “지방재해대책본부”라 한다)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방재해대책본부의 운영) ①지방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한다.

②통제관과 담당관은 각각 자연재해대책업무 담당국장과 과장이 되고 실무반은 도관련 공무원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등으로 한다.

제3조 (지방재해대책본부회의 구성) 지방재해대책본부회의(실무반)는 다음 각호의 기관에 소속한 5급이상공무원(군부대의 경우 소령급 이상 장교를, 경찰공무원의 경우는 경정급이상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충청북도
2. 충청북도지방경찰청
3. 육군 5019부대, 1987부대, 공군 3579부대
4. 충청북도교육청
5. 충청채신청
6. 대전지방국토관리청
7. 대전지방철도청, 영주지방철도청, 서울지방철도청
8. 청주지방노동사무소
9. 청주기상대
10. 기타 지방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4조 (지방재해대책본부회의 협의사항) 지방재해대책본부회의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3.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에 의한 충청북도 재해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방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재해기간 파견근무) 지방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기간(6.15~10.15)에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3조에서 규정한 재해관련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기타) 이 조례에 규정된 것외에 지방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해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충청북도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본 조례(안) 제5조(재해기간 파견근무)의 조문중 지방재해대책본부장은 다음 "재해기간 (6. 15~10. 15)에"를 삭제한다.

# 충청북도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1996년 8월 30일

제안자 : 오성진 의원외 6인

## 1. 수정이유

- 자연재해 발생은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나 년중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므로 재해기간을 하절기 (6. 15~10.15)로 명시하여 지방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요청을 제한하는 것은 하절기 시기 이외의 기간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의 능동적 대처가 지닌하므로 재해기간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 2. 수정 주요골자

- 제5조 (재해기간 파견근무) 지방재해대책본부장은 다음 "재해기간 (6.15 ~ 10.15)에" 를 삭제